

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192호

제안일자 : 2016. 03. 21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제7조제5항).

나. 상임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해 선발함(제7조제6항).

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.

⑥ 상임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, 임면(任免)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단서 신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임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<u>다만,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</p>	<p>제7조(임원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<u>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상임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</p>